

대구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단13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운 담당변호사 강화령, 임종윤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 종결 2021. 11. 19.

판결 선고 2021.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1. 접수 제5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로부터 D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이다.
- 2) 피고는 위 채무자 C의 배우자이다.

나. 종전 배당이의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경위

- 1) D은 2017. 2. 2. C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7. 8. 19.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841).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8. 11.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이에 C은 2018. 12. 1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9. 2. 15.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제1심 판결은 2019. 2. 18.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종전 소송'이라 한다).
- 2) D은 2019. 2. 28. C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사건의 법원은 2019. 4. 15. "종전 소송에 의하여 C이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8,765,48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9. 4. 25.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9. 7. 16.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7. 18. C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1) 피고 및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2017.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족한 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그 1/2 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인 C 명의로 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C이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지분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7. 7. 28.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이하 '중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G, H에게 매매대금 649,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을제2호증의 6, 을제3호증), 위 G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017. 7. 28.	45,000,000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음	을2-5, 을11
2017. 9. 5.	55,000,000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음	을2-5, 을11
2017. 9. 6.	50,000,000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음	을2-5, 을11
2017. 11. 17.	171,239,963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음	을2-5, 을11
2017. 11. 17.	327,760,037	기업은행 부동산담보 대출금 변제	을3
합계	649,000,000		

2) 피고와 C은 2017. 8. 19.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2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90,000,000원은 2017. 9. 15. 지급, 잔금 200,000,000원은 2017. 10. 20.에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동매수인 C 부분은 아래와 같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DOCUMENT: 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부(이미지 생략)

3) 피고와 C은 J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017. 8. 13.	5,000,000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송금	을2-5
2017. 8. 19.	25,000,000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송금	을2-5
2017. 9. 13.	90,000,000	피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송금	을2-5
2017. 10. 20.	31,000,000	C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송금	을6
2017. 10. 20.	169,000,000	C 명의 I은행 부동산담보 대출	을6
합계	320,000,000		

4) C은 2017. 10. 18. K으로부터 40,000,000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는 2017. 11. 20. 위 K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7. 9. 17.경 I은행으로부터 기타 대출취급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을 제4호증). 이에 C은 2017. 10. 20. I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1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6)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7. 11.부터 2019. 10.경까지의 대부분의 대출원리금은 C 명의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C 계좌'라 한다)에서 이체되었고, 그 이후는 주로 피고의 명의의 계좌(I은행(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서 출금하여 납입하거나 이체하고 있다.

한편, C 계좌의 입금의 대부분은 피고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한 것이다.

7)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

다. 구체적인 검토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 소유의 종전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상당수는 비록 C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으나, C 명의의 주된 입금은 모두 피고의 수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은 모두 피고의 수입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한 점, ⑤ 달리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재산세 등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여 매수한 것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다만 1/2 지분의 명의만을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C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광남

별지